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신설 >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47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신설 (안 제31조의2 신설 등)	4
※ [참고] 타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외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7.

다.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만약 이런 정보들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삭제하거나 규제한다면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언론보도 그 매개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등의 심의 대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7조).
- 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반론정보게재·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 다.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등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1.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반론정보게재 청구권 및 추후정보게재 청구권을 신설하고,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가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온라인정보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u>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매개(媒介), 이와 유사한 전과가능성을 가진 행위로</u> ----- ----- ----- ----- ----- <u>언론·표현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온라인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14의3. “확산온라인정보”란 온라인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게재물의 조회 수 나. 게재물의 공유 또는 재게재 수 다.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16. (생략)	15·16. (현행과 같음)
<u><신설></u>	16의2. “정정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17의2. “반론정보게재”란 온라인정보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8. ~ 21. (생략)	18. ~ 21. (현행과 같음)
<u><신설></u>	22. “온라인정보제공자”란 온라인정보를 게재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게재물의 평균 조회 수 나. 구독자 수 다. 온라인정보 게재로 얻는 연평균 수익 라. 그 밖에 게재물의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 -----.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절 온라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
<신설>	제31조의2(온라인정보 등에 관한 정정정보게재 청구권 등)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의 제공자(이하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정정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반론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범죄협의를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정정보게재 청구, 제2항에 따른 반론정보게재 청구, 제3항에 따른 추후정보게재 청구(이하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정정정보게재청구등은 그 대상인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게재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청구의 내용을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정보제공청구권) ①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에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절 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제공 즉시 해당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준용규정) 정정정보게재청구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 --<u>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 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u>----- ----- -----<u>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이하 “권고대상자”라 한다)에게</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권고대상자에</u> ----- -----. ④ ----- <u>권고대상자별로</u> ----- -----. ⑤ ----- <u>권고대상자는</u> -----

현행	개정안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권고대상자는-----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등이 침해된 경우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²⁾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유튜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실상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로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른바 ‘사이버택카’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정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망³⁾을 통해 게재된 정보를 ‘온라인정보’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조회수·구독자수 등을 가진 ‘온라인정보제공자’ 및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정정보게재, 반론정보게재 및 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현행 정정보도청구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라인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리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성명·주소 등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6. 7. 7. 시행 예정)⁵⁾을 통해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1. 6. 개정, 2026. 7. 7. 시행)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거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

작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부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 대응 및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피해구제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을 통한 피해구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분쟁이 반복·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참 고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2026.2.12.)	• 온라인정보도 언론보도 피해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 다만, 「언론중재법」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등 언론보도 행위를 규율하며, 언론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는 언론보도는 이미 언론중재위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운영 중 -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반박내용 게재 요청,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분쟁 조정,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가 가능 - 특히 개정「정보통신망법」(‘26.1.7. 공포, ‘26.7.7. 시행)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이 강화되고, 분쟁 조정 신청을 목적으로도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사이버λεκ카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 • 현행 법체계는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으로, 그 외 온라인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규율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개정안 주요 내용이 망법상 제도와 상당부분 중복 • 따라서, 온라인정보를 언론과 유사한 규율체계로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도 정합성,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6.2.4.)	• 제2조 정의 관련 -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에 준하여 신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중재법은 정치·사회 등의 분야에 대한 보도·논평 등으로 인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의 내용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 개정안은 확산온라인정보, 온라인정보제공자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매우 광범위, 신속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대상 제한하거나, 중재위 인력 및 자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제31조의2 온라인정보등에 대한 정정정보게재청구권 관련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망 피해 조정 신청 가능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중재위에도 조정 신청신청 가능하여 업무 중복 불가피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조정결과 등 효력 충돌 우려되므로 온라인정보 중에서도 정치·사회 등 분야 보도·논평 등 성격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아닌 중재위가 조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제31조의3 정보제공청구권 관련 -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송달불능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 공감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 불응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제재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준용 검토 필요 - 정보제공 청구를 한 경우 기한 내에 조정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조정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규정과, 각하 결정 주체 및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 • 제32조 시정권고 관련 - 중재위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하며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려는 취지 공감 - 하지만 중재위 인력 및 구조로는 방대한 온라인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곤란, 또한 온라인 전반에 시정권고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방미심위 업무와 중첩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6.2.12.)	• 신중검토 - 방미심위의 통신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와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 업무의 중복, 충돌, 이용자 혼선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 유튜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다는 이유로, '정정', '반론' 등 언론보도의 영역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범체계를 재정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한국신문협회 (2026.2.11.)	• 개정안 폐기 필요 - ①언론중재법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언론이 아닌 대상을 언론중재법에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③법 적용 체계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음 - 개정안은 폐기하고 유튜브 등의 온라인정보로 인한 침해구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온라인신문협회 (2026.2.9.)	• 허위정보·사이버레커 피해자 구제 장치 확대라는 취지 공감 • 그러나 유튜브·SNS를 언론과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 개인 창작자까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하며, 기존 정보통신망법·형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할 장치도 마련돼야 함 •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규제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국회·정부·플랫폼·언론·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